

	동아리 연합회 규정	문서번호		3-4-5	
		제정일		1999. 03. 01.	
		개정일		2020. 11. 01.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지위 및 구성) 지위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행사의 집행 기관이다.
2.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내 동아리에 가입 된 전 동아리인을 회원으로 한다.
3. 동아리연합회 임원단은 동아리 연합회장과 부회장, 총무, 인사부, 기획부, 정보부, 문화부, 홍보부로 구성한다.

제2조(임원 선출 방법) 동아리연합회 임원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거는 직접, 평등, 보통, 비밀투표에 의한다.
2. 차기 임원 선출 시기는 임원 임기 완료 이전에 실시한다.

제3조(업무 및 권한)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여 동아리연합회 주관 행사를 총괄하며, 확대간부회의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다.
2. 본 회의 행사계획에 대한 발의권을 갖는다.
3. 활동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안 계획 보고를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, 학생총회에 공개한다.
4. 기타 업무분장은 동아리연합회 내부 업무분장표에 따른다.

제4조(회칙) 동아리연합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내부회칙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	동아리 연합회 규정	문서번호	3-4-5		
		제정일	1999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4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5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